

『생명연구』 원고 투고 및 심사 안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정기 발간하는 『생명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다음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 투고 요령

1) 원고의 접수 및 발간: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연 4회 발간함(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2) 원고의 종류

- ① 논문 : 생명 존중의 세계관과 생명문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양식의 창조를 주제로 한 학제 간 학술 연구논문
- ② 서평: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 관련 저서에 관한 평.
- ③ 논문평: 최근 2년 이내에 발표된 생명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논문에 관한 논쟁적인 평.
- ④ 에세이: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에세이

3) 분량

- ① 논문은 한글(2010이상)로 25매 내외로 작성하되, 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5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 ② 서평, 논문평 및 에세이는 한글(2010이상)로 5매 이내로 작성한다.

4) 투고

- ① 원고는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에 접수한다. 논문 접수는 ‘회원 가입 신청’ -> ‘로그인’ -> ‘원고 접수’ 의 순서로 진행된다.
- ② 심사 일정상, 해당 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5) 원고 접수 및 문의

- ① 원고 접수 홈페이지 : <https://soganglifecult.jams.or.kr>
- ② 문의 : 02-705-8216 / lifecult@sogang.ac.kr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구체적인 순서

- ① 논문 제목
- ② 성명 (소속을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 ③ 국문초록: 주제분류 (3개 이내), 주제어 (4개 이상 6개 이내), 요약문 (한글 500(±50)자 또는 A4 1/2매 내외) 포함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영문초록: 논문제목, 성명 (소속은 성명 아래), Subject (영문, 3개 이내), Key words (영문, 4개 이상 6개 이내), Summary (영문 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포함.
- ⑦ 부록(필요한 경우)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순서를 적용한다.

2) 원고의 세부 편집 양식: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소프트웨어(한글 2010 이상, .hwp)로 작성해야 하되, 한자와 외국어는 필요시 괄호 속에 병기한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제목’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6, 진하게.
- ② ‘저자’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 ③ 저자의 ‘소속’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 ④ ‘부’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4, 진하게. 예) I
- ⑤ ‘장’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2, 진하게. 예) 1.
- ⑥ ‘절’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진하게. 예) 1)
- ⑦ ‘항’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진하게. 예) (1)
- ⑧ ‘본문’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 크기 10,
- ⑨ ‘주석’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5.
- ⑩ 본문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 ⑪ 주석 문단모양: 내어쓰기 11.9, 줄간격 145, 정렬방식 혼합.
- ⑫ 용지설정 :
 - 용지 종류 : 사용자 정의 폭 194, 길이 263
 - 용지 여백 : 위쪽 22, 머리말 13, 왼쪽 27, 오른쪽 27, 아래쪽 25, 꼬리말 0
- ⑬ 참고문헌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 성명은 반드시 영

문을 병기한다.

3) **공동연구:** 주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 김OO, 주저자.
 ** 홍OO, 교신저자.
- ③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 ④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연구비 지원 논문 또는 학위 논문 관련 표기**

- 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OO년도 OOOO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OO년도 OOOO의 연구용역보고서 “OO”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필자의 OO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논문 요약문(초록) 작성 요령**

- ① 논문 요약문은 반드시 작성하여 수록한다.
 - ② 논문의 요약문은 주제 분류, 주제어(혹은 주요어), 요약문 본문으로 구성된다.
 - ③ 요약문의 본문은 500(±50)자 분량으로 작성하고, 투고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 ④ 본 학술지는 학제 간 연구지이므로, 주제 분류는 투고자 본인의 해당 전공 분야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분류 주제의 수는 세 개 이내로 한다.
 - ⑤ 주제어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주제, 인물 등을 선정하여 4-6개로 한다.
 - ⑥ 주제 분류어, 주제어, 요약문 본문은 반드시 국문과 외국어로 함께 작성한다.
 - ⑦ 서평 및 논문평은 해당 사항 없음.
- ※ 국문/외국어 초록 작성 시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예)

주제분류	법철학, 의료법학
주제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치료(중단), 암관리법, 회복(불가능성)
요약문	본 연구는...

Subject	Philosophy of Science, Modern Philosophy
Key words	Causation, Regulative Use of Understanding, Analogies of Experience, Laws of the Nature
Summary	Though Kant's theory of causation is ...

6) 본문 작성 요령

- ① 글자 모양 : 휴먼명조, 글자 크기 10, 장편 98, 자간, -9
- ② 문단 모양 : 첫줄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 혼합
- ③ 본문 항목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I. II. III. /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④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인용문 중 생략 부분은 문장 일부 생략 시 … 부호를 문장 전체 생략 시 (...) 를 사용한다.
- ⑤ 외래어 표기는 필요시 병기한다. 이 때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 ⑥ 기타 편집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7) 주석 작성 요령

- ① 인용 주석은 반드시 해당 면에 내각주로 처리한다.
- ② 일반적인 약정에 따라 괄호 안에 저자명, 해당 저서 또는 논문의 출판연도,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출판연도와 페이지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 페이지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이종위(2014: 62)은..., 예 2) ... (이종위, 2014: 62).
- ③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 1) Freund(2006, 67-69)는… 예 2) … (Freund, 2006: 67-69).

- ④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손진분과 한부모(2007: 45-60)은… , …(손진분 · 한부모, 2007: 45-60)

Griffin와 Soskolne(2013: 769-774)은… , …(Lincoln and Guba, 1985)

- ⑤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 · 내각주 모두 “외” 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거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 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 로 표기한다.

예) 본문: 한인영 외(2005: 251)는… , … (한인영 외, 2005: 251).

본문: Neugarten et al(1996)은… , …(Neugarten et al., 1996).

- ⑥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년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홍백의, 2005; 김진옥,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 ⑦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 ⑧ 본문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각주 등은 외각주로 작성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작성 요령

- 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논문 맨 뒷부분에 붙인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 수록하며, **한글 문헌 → 한문 문헌 → 외국 문헌 →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순으로 열거한다. 수록 순서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에 따른다.

- ② 일반적인 약정에 따라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동양어권 저서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저서명』, 발행처의 순서로,

예) 강영안, 1998, 『자연과 자유사이』, 문예출판사.

동양어권 논문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저널명』, 권 내지 호수: **페이지**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이종위, 2014, 「도덕경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생명력과 특징들」, 『생명연구』, 32: 59-88.

서양어권 저서일 경우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저서명(이탤릭체), 발행장소: 발행처.

서양어권 논문일 경우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논문명”, 저널명(이탤릭체), Vol(No): pp.

예) Allen, K., 1998, “Essential Concepts of Addiction for General Nursing Practice”,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3(1): 1-13.

- ③ 역서일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옮긴이 옮김, 『역서명』, 발행처.

- 옮긴이를 기록하되 한글일 경우 ○○○ 옮김 으로, 한자일 경우 ○○○ 譯 으로, 서양어권일 경우 trans. ○○○ 으로 기록한다.

- ④ 인터넷 문서일 경우는 저자명, 발행년도, 「문서제목」, 사이트 주소 (검색일: 연월일)로 표기한다.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8, 「Mental Causation」,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ntal-causation/>, (검색일: 2019.02.05.)

- ⑤ 신문이나 일반 저널의 기사인 경우 신문명이나 저널명은 < >표시 안에 넣어준다.

예1) <한국경제>, 발행연도, 「기사 제목」, 00년 00월 00일 00면

예2) <동아일보>, 1961, 「언도를 받고있는 (右부터)文(문)용채 · 조규진 · 윤우현 · 장일순 피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검색일: 2018.12.10.)

- ⑥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⑦ 학술대회발표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⑧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⑨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9) 영문초록 및 프로필의 작성 기준

- ① 영문 초록의 제목은 휴먼명조(글자크기 16)로 작성하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로 기입한다.

- ②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을 표기한다.

예) Kang, Sun Kyoung

(Sogang University)

- 10)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1) 발간일 2개월 이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대상으로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투고 논문 당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 논문 심사를 위촉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발표회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발표 시의 논평자를 포함하여 2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
- 3)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내용 적합성 : 생명 존중의 세계관과 생명문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양식의 창조 등 본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창의성: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지와 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논리성 :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적인 형태의 주장이 합당한 논거와 더불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용어 사용이 일관되어야 하고, 주장, 논거, 관점 개념 등이 명료하게 표현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 ④ 중요성: 해당 주제가 생명 및 생명 현상과 관련하여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 ⑤ 전문성: 해당 연구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해당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충분히 숙지한 것이어야 한다.
- 4)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2008년 3월 2일자로 제정된 본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 5) 게재가 결정되면, 해당 투고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가 발간되는 즉시 2부를 투고자에게 우송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수(5부 이하)를 추가 증정할 수 있다.

4. 게재논문 저작권 및 양도

- 1)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속한다.
- 2) 『생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최종논문 투고 시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3) 『생명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될 논문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한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상기한 항목들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5) 제출된 투고 원고 및 전송 파일은 반환되지 않는다.

5. 게재

- 1)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20만원, 개인 연구는 10만원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과 관련하여 기준 분량인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오천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6. 연구윤리

- 1) 『생명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생명윤리』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한시적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를 생명윤리심의(IRB)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패널 등)를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7. 부칙

- 1)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1차 개정 : 2011년 11월 23일
2차 개정 : 2012년 1월 18일
3차 개정 : 2015년 7월 20일
4차 개정 : 2019년 2월 19일
5차 개정 : 2019년 3월 2일
6차 개정 : 2019년 9월 1일
7차 개정 : 2020년 5월 30일

□ 『생명연구』 연구윤리 규정 □

-2008년 3월 2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도 사퇴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생명연구』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배제)
- ③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⑤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⑥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하도록 한다.
- ② 예비 조사 결과는 예비 조사 시작 후 2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 예비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 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⑦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⑨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제척된 자로 인해 연구윤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상임연구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임시 연구윤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⑩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이 쉽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⑪ 최종 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항하는지 여부 3) 관련 근거 4) 최종 판정 및 처리 결과 5) 연구윤리위원 명단이 포함된다.
- ⑫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 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심의를 허용 여부는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연구윤리 협약서)

- ①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에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한다.
- ② <연구윤리협약서>는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에서 논문 투고 시 작성하는 연구 윤리협약서 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3차 개정, 2019.09.01.).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생명연구』 제54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1차 개정 : 2019년 2월 19일

2차 개정 : 2019년 9월 1일

□ 『생명연구』 논문심사규정 □

제1조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조 (심사 송부)

투고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마감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각 투고 논문마다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자정보 (<https://www.kri.go.kr>)의 연구자 정보를 활용하여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로 평균 이상의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내용 적합성, 2) 창의성, 3) 논리성, 4) 중요성, 5)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본 연구소의 지정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게재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제6조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최종결과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4심사위원 의뢰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탈락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탈락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탈락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탈락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탈락

제7조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제8조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제 1항 수정 후 게재

최종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맞춰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투고자가 수정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별다른 사유 없이 수정 판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제 2항 제 4심사위원 의뢰

제4심사위원에게 의뢰한 경우 제4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게재, 수

정 후 게재, 탈락)을 결정한다. 투고자가 수정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별다른 사유 없이 수정 판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제 3항 수정 후 재심사

최종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 위원회에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기존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투고자가 수정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별다른 사유 없이 수정 판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제 4항 논문 게재 일자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하여 재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시 반드시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적절하다 판단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생명연구』 제10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2.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44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3.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51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별첨〉 논문심사서 양식

〈생명연구〉 논문심사서

논문 제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내용 적합성 (20점)	-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존중의 세계관 고취라는 본 연구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창의성 (20점)	-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논리성 (20점)	-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 제시되었는가? 언어적 표현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중요성 (20점)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학술적이고 시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전문성 (20점)	- 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고 전문적인가?			
(항목 당 20점 만점으로 평가)				총점
게재 여부	91점 이상	80~90점	70~79점	69점 이하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총 평				
<p>(게재 불가일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일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p>				

심사자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심사일자 : 년 월 일